

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 지정증

- 지정번호:
- 법인명:
- 대표자 성명: (생년월일:)
- 주된 사무소 소재지:

「물류정책기본법」 제28조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3항에 따라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관계 행정기관

직인